



의안번호	제38호
회의 연월일	2025. 4. 7. (제561회 회의)

심의
·
의결
사항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(행정안전부령)

제출부서	경찰청 (생활안전교통국)
제출연월일	2025. 4. 1.

교통기획과장, 교통기획계장

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주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「도로교통법」이 개정(법률 제20544호, 2024. 12. 3. 공포, 2025. 6. 4. 시행) 됨에 따라,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운전면허 정지·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결정통지서에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관련 안내문구를 추가하고, 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」 제정(법률 제20167호, '24. 1. 30. 공포, '24. 7. 31. 시행)에 따라 공단 명칭이 “도로교통공단”에서 “한국도로교통공단”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3(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)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“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에리트로마이신(Erythromycin)
2. 베라파밀염산염(Verapamil Hydrochloride)

별표 28 제2호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	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	제93조	○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(혈중알코올농도 0.03퍼센트 이상)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○혈중알코올농도 0.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○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한 사람,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 또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(혈중알코올농도 0.03퍼센트 이상)에서 운전한 때
---	------------------	------	--

별표 28 제2호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	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때	제93조	○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규칙 제27조의3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한 때
-----	---------------	------	--

별지 제64호 및 제65호서식 3쪽 중 1쪽 수수료란 중 “도로교통공단”을 “한국도로교통공단”으로 한다.

별지 8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■ 「도로교통법」 시행규칙 [별지 제81호서식]

보내는 사람

우체국

요금후납

받는 사람

행정우편

접 는 선

년 호

운전면허([]정지·[]취소)처분 사전통지서

주소

성명(회사명)

출석요구일 년 월 일

접 는 선

귀하가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대상(취소대상)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
년 월 일까지 ○○○경찰서(교통관리계·민원실)로 운전면허 정지·취소처분 사전
통지서, 운전면허증(분실 시 다른 신분증)을 지참하시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확인내용 : 운전면허 취소

운전면허 정지

일간

- 1) 토요일·공휴일은 휴무입니다(출석요구 기간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가능).
- 2)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3) 본 사전통지서 운전면허(정지·취소) 처분 전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내로서, 운전면허(정지·취소)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인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.

년 월 일

○○경찰서장 직인

안내전화:

담당자 ○○○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별지 제82호서식 앞쪽 이의신청 방법 안내란 제2호 중 “시·도경찰청(경찰서)를 경유하여”를 “시·도경찰청장(취소처분) 또는 경찰서장(정지처분)을 피청구인으로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7조의3(혈중알코올농도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물품) 법 제44 조제5항에 따른 “혈중알코올농 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 품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에리트로마이신(Erythromy cin)</u> <u>2. 베라파밀염산염(Verapamil Hydrochloride)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경찰청 교통기획과	
연 락 처	(02) 3150 - 0659